



보도시점

2024. 9. 2.(월) 11:00
9. 3.(화) 조간

배포

2024. 9. 2.(월) 09:00

추석엔 먹거리 안심! 수입 축산물 이력, 검역본부가 꼼꼼히 확인합니다

- 수입 쇠고기·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, 관련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·관리 점검

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김정희, 이하 검역본부)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3일까지,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.

* 국내산 축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시도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점검 예정

특별단속반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약 35명으로 편성되며, 전국의 수입 쇠고기·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·판매하는 식품위생·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, 거래·판매 신고 및 기록·보존 여부 등을 점검한다.

특히,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추석 선물용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*와, 장기간 판매·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.

* 통신판매업은 현장점검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점검

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수입쇠고기·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의 이력번호를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(www.meatwatch.go.kr)에 입력하면 원산지 정보, 수입 이력, 유통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고, 영업자도 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전화 상담실(☎1688-0026)을 통해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·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.

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“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·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”이라고 하며, “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붙임 점검대상 업체 및 주요 점검사항

담당 부서	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	책임자	과 장	정승교 (054-912-0360)
		담당자	사무관	손승미 (054-912-0380)



1. 점검대상 업체

- 수입산 쇠고기·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식품 위생·통신판매영업장
 - (축산물위생영업장) 수입식품 등 수입·판매업소, 식육포장처리업소, 식육(부산물전문)판매업소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
 - (식품위생·통신판매영업장) 영업장 면적 700㎡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,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·위탁급식업소, 통신판매업소

2. 영업자별 주요 점검사항

- 축산물위생영업장
 -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(meatwatch) 쇠고기·돼지고기 전자적 거래·판매신고 여부
 -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내 점검영업장 매입·매출내역과 영업장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(1688-0026)를 활용하여 매입·매출내역 확인
 - 수기장부에 적정 기록·보존 여부(수기장부 기록 영업장)
 - 식육판매표지판 또는 비닐포장 등에 이력번호 표시 여부
 -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등에 이력번호 기재 후 발급 여부
 - 수입쇠고기·돼지고기 보관 시 이력번호 표시 후 보관 여부
 - 전자적 거래신고 대상 업종 포함여부 확인
 - 수입식품 등 수입·판매업, 식육판매업 점검 시 상호 업종 및 통신 판매업 겸업여부 파악 등

□ 식품접객업·통신판매영업장

○ 위탁급식업소·집단급식소

- (보관) 이력번호 기재된 거래명세서·영수증 보관 여부(6개월간)
- (게시방법)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, 이력번호 게시·표시 적정 여부
- (게시기한) 수입쇠고기·돼지고기(부산물제외)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게시 또는 표시 여부

○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

- (적용대상) 영업장 면적 확인 후, 영업장 내 수입쇠고기·돼지고기(부산물 제외) 조리·판매여부
- (보관) 이력번호 기재된 거래명세서·영수증 보관 여부(6개월간)
- (게시방법)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, 이력번호 게시·표시 적정 여부
- (게시기한) 수입쇠고기·돼지고기(부산물 제외) 공급일자 기준 7일 이내 게시하고 해당 수입쇠고기·돼지고기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했는지 여부

○ 통신판매업소

-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·고지 여부
- 이력번호 기재된 거래명세서·영수증 보관 여부(6개월간)